

# 관 리 규 정



## - 목 차 -

제1조 목적	27	
제2조 정의		
제3조 효력의 순위		
제4조 제·개정절차		
제5조 규정 등의 편성	28	
제6조 소급적용 금지		
제7조 국제공인시험기관운영품질문서		
<b>부 칙</b>	<b>28</b>	
① (시행일) ② (경과조치)		



# 관 리 규 정

2005. 04. 06제정, 2011. 02. 24개정  
2011. 09. 06개정, 2015 .11. 09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CO융합섬유연구원 (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규정과 규칙(이하 “규정 등” 이라 한다)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11.0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제반 사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칙”은 규정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규정 이외의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말한다.

제3조(효력의 순위) ①규정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동 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

제4조(제·개정절차) ①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원장이 발의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규칙은 원장이 제·개정 및 폐지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11.09.06>

②규정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11.09.06>

1. 규정 등 명칭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3. 주요골자 (제정 또는 개정시)
4.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대비표 (부분개정시)
6. 기타 참고사항

제5조(규정 등의 편성) 규정 등은 간단·명료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소급적용 금지) 규정 등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국제공인시험기관운영 품질문서) KOLAS와 관련한 품질문서(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의 제정, 개정, 폐지관리는 연구원에서 별도 운영 관리한다.

## 부 칙

(2005.04.06.), (2011.02.24.), (2011.09.06.), (2015.11.0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